

학교상담법 10대 원칙 보완 수정안

가칭 「학교상담법」, 일명 ‘유달리법’ 제정을 위한 10대 원칙

학생을 선별·분류하는 학교에서, 삶을 읽고 성장시키는 학교로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진 상담·민원·책임 구조에서, 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상담 체계로

서문. 왜 ‘유달리법’인가

가칭 「학교상담법」은 학교 안에서 병명과 문제행동으로만 불렸던 아이들이 자기 삶의 언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유달리법은 위험한 행동을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 아이의 행동에 책임을 묻되, 그 행동 뒤의 마음을 읽고, 학교 안에서 다시 관계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유달리법은 정신과 진료를 막자는 법도 아니다.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위기와 교육적 상담이 먼저 필요한 어려움을 구분하여, 실제 위기 학생은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의 어려움은 학교 안에서 상담과 관계 회복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유달리법은 결코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학생 문제, 학부모 민원, 위기관리 책임을 더 떠넘기는 법이어서는 안 된다.

학교상담법은 교사 개인에게 무질서하게 전가되어 온 학생상담, 생활지도, 위기 판단, 학부모 민원, 행정기록, 외부기관 연계 책임을 학교 전체의 공식 체계 안에서 나누고 정리하는 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상담법은 학생을 보호하는 법인 동시에,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어야 한다.

원칙 1. 학교보건과 학교상담은 구분되어야 한다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보건교육, 질병 예방, 응급처치, 신체 건강관리, 정신건강 상태 조사의 영역을 다룬다.

그러나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 상담, 생활 맥락 이해, 상담 비밀보장, 학생 내면 정보 보호,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협력, 의료기관 연계 기준, 학부모 상담과 민원 처리의 구분은 학교상담법의 영역이다.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검사하는 행위는 학교보건의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른 상담, 기록, 전문기관 연계, 의료기관 권유, 사후지원, 학교 안 관계 회복은 학교상담법에 따라야 한다.

보건교사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보건 전문가이고, 상담교사는 학생의 내면과 관계,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교육상담 전문가다. 두 역할은 협력해야 하지만 서로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원칙 2. 학생은 진단 대상이 아니라 성장하는 존재다

학생의 무기력, 산만함, 분노, 수업 거부, 관계 회피, 등교 거부는 곧바로 정신질환이나 위험 신호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어려움은 먼저 생활 맥락, 관계, 가족 기대, 입시 압박, 진로 혼란, 실패의 두려움, 망신감, 외면당함, 자기이해의 문제 속에서 읽혀야 한다.

학생은 관리해야 할 위험군이 아니라 성장하는 존재다. 학생의 고통은 위험 신호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삶의 질문일 수 있다.

학교상담법은 학생을 병명과 위험군으로 닫기 전에, 학생이 자기 어려움을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원칙 3. 학생은 낙인 없이 상담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학교 안에서 낙인 없이 상담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상담은 위험군 판정이나 행정처리의 절차가 아니라, 학생이 자기 삶의 어려움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다.

학생은 자신의 어려움을 병명이나 분류명으로만 설명받기 전에, 자기 언어로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생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이유로 상담을 받는지, 상담 내용이 어디까지 기록되는지, 누구에게 공유될 수 있는지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상담법은 학생이 “상담실에 가면 문제 있는 아이가 된다”는 두려움 없이, 자기 삶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원칙 4. 검사는 상담의 결론이 아니라 참고자료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는 학생을 규정하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사는 상담을 위한 제한적 참고자료일 뿐이며, 학생의 삶 전체를 대체할 수 없다. 검사 결과가 상담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처럼 작동할 때, 학생은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분류되는 대상이 된다.

학교상담법은 검사 결과가 학생을 위험군으로 고정하거나 병원·전문기관 연계의 자동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사 이후에는 반드시 학생의 생활 맥락, 담임교사의 관찰, 상담교사의 전문 상담, 학생 자신의 언어, 학부모와의 협력 가능성, 실제 위기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검사 결과는 행정적 책임 회피의 근거가 아니라, 학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제한적 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원칙 5. 담임교사는 학생의 생활 맥락을 읽는 1차 교육상담자이며, 학교는 담임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단순한 교과 담당자나 행정관리자가 아니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교생활, 또래관계, 학업 부담, 진로 고민, 가정과 학교 사이의 갈등, 자기이해의 변화를 일상적으로 관찰하고 상담교사와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1차 교육상담자다.

그러나 이것은 담임교사에게 전문상담, 치료, 위기판단, 학부모 민원 처리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존 원칙에도 담임교사의 상담 역할이 추가 부담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되며, 시간·수련·협력 체계·처우·법적 보호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학교상담법은 담임교사가 학생의 삶을 읽는 교육자로 설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담임교사의 교육상담 시간 보장.

상담교사와의 공동 사례회의 시간 보장.

학생 생활·진로상담을 위한 연수와 수련 체계 마련.

담임교사를 위한 슈퍼비전과 전문 자문 제공.

담임교사의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담임교육상담수당 등 처우 보장 근거 마련.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담임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학부모 민원과 책임 추궁을 담임교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학교관리자 책임 원칙 마련.

학생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제기와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는 공식 절차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담임교사는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교육자이지,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최종 책임자가 아니다.

학교상담법은 담임교사에게 상담 책임을 더 얹는 법이 아니라, 담임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시간, 협력, 보호, 책임 분담 구조를 보장하는 법이어야 한다.

원칙 6. 상담교사는 학교상담의 독립적 전문 주체이며, 행정·민원 처리자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상담교사는 검사 결과 처리자나 외부기관 연계 담당자가 아니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내면, 관계, 자기이해, 학교생활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학교 안 회복 과정을 설계하는 교육상담 전문가다.

상담교사는 상담실에 고립된 사람이 아니라,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 주체다.

학교상담법은 상담교사의 독립적 전문 권한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학생상담 계획을 수립할 권한.

학생의 내면 정보와 상담 내용을 보호할 권한과 의무.

담임교사에게 학생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할 권한.

필요한 경우 공동 사례회의를 요청할 권한.

위기 수준을 평가하고 의료기관·전문기관 연계 여부에 대해 전문 의견을 제시할 권한.

상담 기록을 상담 목적에 맞게 작성·보관하고, 행정자료로 무분별하게 전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권한.

정기적 연수, 슈퍼비전, 사례 연구,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권리.

또한 상담교사는 학부모 민원 처리자나 학교 행정의 책임 완충 장치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상담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마음과 관계 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학부모의 반복적 민원, 교직원 책임 추궁, 행정적 항의는 학교장이 책임지는 공식 민원 처리 절차로 분리되어야 한다.

상담교사의 전문성은 학교상담법의 중심이다. 담임교사가 학생의 생활 맥락을 읽는다면, 상담교사는 그 생활 맥락을 학생의 내면·관계·위기 수준과 연결해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원칙 7.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이며, 학교관리자는 협력 구조를 책임져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생활 맥락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내면과 관계를 전문적으로 해석한다.

두 역할은 서로를 대체해서는 안 되며, 공동 사례회의와 학생 지원계획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상담교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상담교사가 담임교사의 행정 보조자나 단순 연계 담당자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상담법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립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생활 맥락, 교우관계, 학업 태도, 진로 고민, 학교생활 변화를 관찰한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내면, 관계, 자기이해, 위기 수준을 전문적으로 상담한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필요한 경우 공동 사례회의를 통해 학생 지원 방향을 정한다.

상담교사는 담임교사에게 전문 자문을 제공하되, 상담 비밀보장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담임교사는 상담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학교는 두 역할이 협력할 수 있도록 시간과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반드시 학교관리자의 책임이 추가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협력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공동 사례회의 시간, 업무 조정, 행정지원, 보호자 소통 절차,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감과 학교관리자는 학생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할 충돌, 학부모 민원, 안전 문제, 기록 문제, 외부기관 연계 문제를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학교관리자는 학교상담 체계의 운영 책임자이며,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학생을 교육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상담법은 담임교사에게 상담 책임을 떠넘기는 법이 아니다. 또한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법도 아니다. 학교관리자가 책임지는 협력 구조 안에서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생을 학교 안에서 이해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법이다.

원칙 8. 학생의 내면 정보와 상담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며, 학부모 상담과 학부모 민원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학생의 상담 내용, 정서적 어려움, 가족 갈등, 자살 생각, 관계 문제는 민감정보로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신체의 긴급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내면 정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유되어야 한다.

상담 내용이 생활지도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상담 기록은 상담 목적에 맞게 작성·보관되어야 하며, 학생의 낙인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검사, 상담, 외부기관 연계, 의료기관 권유, 정보 공유, 기록 보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아야 한다. 형식적 안내가 아니라 실질적 이해에 근거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은 자기 내면 정보가 어디로 이동하고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학부모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성장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협력자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학생 이해와 지원을 위해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 상담과 학부모 민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학부모 상담은 학생의 이해와 회복을 위한 협력적 과정이다.

학부모 민원은 학교 운영과 행정 책임에 관한 공식 처리 사안이다.

학부모의 항의, 이의제기, 반복적 연락, 교직원 책임 추궁, 사과 요구, 처벌 요구, 학폭 처리 요구, 상담 내용 공개 요구, 특정 교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학생상담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안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라, 학교장이 책임지는 공식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다루어야 한다.

학교상담법은 다음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학부모 민원은 학교장이 접수·분류·처리 책임을 진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학생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학부모 상담에 참여한다.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반복적 민원 대응, 책임 추궁, 사과 요구, 민원 조정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상담 내용과 학생 내면 정보는 학부모 민원 대응 자료로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학부모 민원이 학생상담을 방해하거나 교직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학

교관리자는 즉시 공식 대응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장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면 민원 절차, 면담 동석 원칙, 녹취·기록 기준, 반복 민원 대응 기준, 교육청 지원 요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상담법은 학부모를 학생 회복의 협력자로 세우되, 학부모 민원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상담 업무로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원은 학교 관리자의 공식 책임이고, 상담은 학생의 삶을 이해하고 회복을 돕는 교육적 과정이다.

원칙 9. 의료기관 연계 기준은 명확해야 하며, 연계 책임도 학교 체계 안에서 분담되어야 한다

학교상담법은 정신과 진료를 막자는 법이 아니다.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위기와 교육상담이 먼저 필요한 어려움을 구분하는 법이다.

자살 계획, 반복적 자해, 학대 피해, 심각한 폭력 위협, 현실 검증력의 심각한 손상, 학생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긴급 위협은 즉각적 전문기관·의료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 무기력, 관계 갈등, 학업 실패 후 좌절, 등교 거부, 수업 회피, 진로 혼란, 입시 불안, 가족 기대와 갈등, 자기 존재감 상실은 먼저 학교 안 교육상담과 생활 맥락 이해가 필요하다.

의료기관 연계는 학생을 학교 밖으로 넘기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제 위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의료기관 연계 여부는 담임교사 개인의 판단이나 책임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상담교사의 전문 의견, 담임교사의 생활 관찰, 학교관리자의 책임 있는 결정, 보호자와의 협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연계 이후에도 학교 안 관계 회복과 성장 지원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관리자는 의료기관 연계 과정에서 보호자 통보, 기록, 외부기관 협의, 안전조치, 사후지원 절차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

원칙 10. 학교상담은 학교 안 관계 회복과 성장을 목표로 하며, 학교 전체가 책임지는 운영 체계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상담은 학생을 외부기관에 연계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학교상담은 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의 책임을 배우고, 친구와 교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상담은 문제행동을 없애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책임지며, 학교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유달리법, 즉 학교상담법은 위험한 행동을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 아이의 행동에 책임을 묻되, 그 행동 뒤의 마음을 읽고 학교 안에서 다시 관계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다만 이 과정은 좋은 담임교사 한 명의 헌신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학교상담은 다음의 학교 운영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담임교사의 생활 맥락 관찰.
- 상담교사의 전문 상담과 자문.
- 학교관리자의 공식 책임과 민원 대응.
- 공동 사례회의와 학생 지원계획.
- 상담 기록과 내면 정보 보호.
- 학부모 상담과 학부모 민원 분리.
- 교육청의 슈퍼비전과 전문 자문.
- 의료기관 연계 기준과 사후지원 체계.
-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법적 보호.
- 행정업무 경감과 상담 시간 보장.

학생을 선별·분류하는 학교에서, 삶을 읽고 성장시키는 학교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학교에서, 학교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상담 체계로.

이것이 학교상담법, 일명 유달리법의 최종 목표다.

추가해야 할 입법 검토 과제 보완안

기존 문서의 향후 입법 검토 과제는 학교보건법과 학교상담법의 역할 구분, 검사 이후 절차, 공동 사례회의, 정보보호, 의료 연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 항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1. 학교보건법상 정신건강 상태 검사 조항과 학교상담법의 역할 구분
2. 검사 이후 상담·기록·전문기관 연계·사후지원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3.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공동 사례회의 시간 및 행정업무 경감 근거 마련
4. 학생 내면 정보와 상담 기록의 보호 기준 마련
5. 의료기관 연계가 필요한 위기와 학교상담이 먼저 필요한 어려움의 판단 기준 마련
6. 학부모 상담과 학부모 민원의 법적 구분 기준 마련
7. 학교장이 책임지는 공식 학부모 민원 처리 절차 마련
8.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학부모 민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마련
9. 학부모 면담 시 관리자 동석, 서면 민원 접수, 반복 민원 대응 기준 마련
10. 학교상담 과정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면책·법률지원·교육청 자문 체계 마련
11. 상담교사가 행정·연계 담당자로 축소되지 않도록 전문 권한과 업무 범위 명시
12. 학교관리자의 학교상담 운영 책임, 협력 구조 보장 책임, 민원 대응 책임 명시

핵심 보완 문장

이 문장은 앞으로 학교상담법 설명자료, 의원실 제출자료, 교사 대상 설명자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학교상담법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상담과 민원 책임을 더 떠넘기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개인에게 무질서하게 전가되어 온 학생상담, 생

활지도, 학부모 민원, 위기관리, 외부기관 연계 책임을 학교장과 학교 운영 체계가 공식적으로 분담하도록 만드는 법이다.

더 짧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상담법은 교사에게 “이런 것까지 하라”는 법이 아니라, 교사가 더 이상 “이런 것까지 혼자 떠안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다.